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4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허 영·박지원·한병도

임호선 · 홍기원 · 서영교

박 정 • 주철현 • 박상혁

민형배 · 전재수 · 김영진

소병훈 · 정준호 · 박정현

이연희 • 이기헌 • 전용기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 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해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또한 자율적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가 큼.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5조).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보존"을 "보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u>보존</u>) ①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u>보존 등</u>)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	③
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	
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	
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u>있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
	식지원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11조에 따
	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u>실시할 수 있다.</u>
<u><신 설></u>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u>⑤</u> (생 략)	<u>⑦</u> (현행 제5항과 같음)